청렴 海 부산

- 깨끗한 세상, 청렴한 공단 만들기를 위한 -

2014년 청렴 시책평가 추진계획

부산시설공단
감사팀

- 깨끗한 세상, 청렴한 공단 만들기를 위한 -

2014년 청렴 시책평가 추진계획

우리 공단의 2014년 청렴 시책평가의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각 부서의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.

Ⅰ 평가 목적

□ 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 촉진에 따른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

□ 부서의 청렴 시책에 대한 체계적 진단으로 청렴도 향상

Ⅱ 추진 근거

○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

(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-848, 2014.04.10.)

○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(감사팀-1474, 2014.04.28.)

Ⅲ 평가 방향

□ 자율적 1부서 1청렴과제 실천운동 운영,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여부 등 부서의 청렴 시책 추진 노력 등

□ 공정성,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 체제 구축

□ 청렴에 대한 의식 제고와 실천 동기 부여

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영역을 바탕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실시

Ⅳ 평가 세부계획

□ 평가대상 : 총 26개 부서(부서별 평가)

□ 평가대상 기간 : 2013. 10. 01. ~ 2014. 09. 30.

□ 평가내용 : 2014년 청렴 시책관련 업무 전반

□ 평가방법 : 서면평가 후 현장확인 병행

□ 평가위원 :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

□ 평가영역 및 비중

영역	평가부문	단위과제	평가방법	배 점
계				100점
1	반부패 인프라 구축	자체 감사 활성화 부패 처벌 강화	절대평가	20점
2	정책투명성·신뢰성 제고	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	절대평가	10점
3	부패유발요인제거·개선	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	절대평가	30점
4	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개선	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	절대평가	40점
	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(감점)		감점지표	총점의 10%까지

□ 평가방침

○ 우수부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, 부진부서 도약 견인역할

○ 평가대상 기간 중 부패사건 발생 시 해당부서 수상 제외

Ⅴ 평가반 구성 세부운영 계획

□ 1차 평가 : 청렴시책실무반(8명), 현지심사 등 실무평가 등위결정

○ 구　　성 : 실·단·관·팀 대표로 구성된 청렴시책실무반

○ 평　　가 : 감사팀 청렴총괄담당 주관 8명 ▷ 1차 평가

▷ 제척사유 적용 - 해당 실·단·관 평가 제외로 공정성 확보

□ 2차 평가단 : 4명으로 구성, 최종 수상부서 순위결정

○ 구　　성 : 청렴옴부즈만 3명, 감사팀장

○ 평　　가 : 1차 평가 결과에 의거 1, 2, 3등 순위 결정

▷ 최우수, 우수, 장려(2) 등 4개부서 선정을 위한 청렴시책 심의

▷ 총 26개 부서 중 수상부서 최종 선정 및 시책 자문

□ 투명한 평가를 위한 시책(제도) 적극 추진

○ 공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각서, 서약서 등 징구

○ 평가단 제척사유 적용, 평가위원 합의 결정 등 객관성 확보

Ⅵ 평가결과 조치 인센티브 부여

□ 청렴시책 평가결과 ▷ 내부평가(BSC) 반영(5%)

○ 최종 평가결과 내부평가 반영 요청(감사팀 ⇒ 창의성과파트)

○ 부서·개인별 내부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

□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

○ 최우수(1개부서) : 상금 1,000천원, 유공직원 표창

▹ 최우수 청렴부서 유공직원 표창 : 총무인사파트

○ 우　수(1개부서) : 상금 700천원

○ 장　려(2개부서) : 상금 800천원(400천원×2개부서)

○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지출 : 재무회계파트

▹ 소요예산 : 2,500천원

▹ 예산과목 : 대행사업비, 포상금(청렴직원 인센티브 포상금)

※ 최우수 부서 자체 종합감사 1회 면제

□ 최우수 부서 청렴유적지 탐방기회 부여

○ 청렴유적지 탐방 : 1박2일 ▹ 탐방 예산지원 50만원

○ 예산과목 : 대행사업비, 행사홍보비(청렴유적지 탐방)

Ⅵ 행정사항

□ 2014년 청렴시책 평가 대비 사전 준비 철저 : 전부서

□ 청렴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: 10. 7.(화)

붙임 1. 2014년 청렴 시책평가 지표 체계

2. 2014년 반부패·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

붙임1 2014년 청렴 시책평가 지표 체계

	평가영역	평가부문	단위과제 * 괄호( )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	비고
반부패경쟁력	A. 반부패 의지·노력 (1.00)	1 반부패 인프라구축 (0.20)	1-1. 자체감사 활성화(0.05)	
			1-2. 부패처벌 강화(0.15)	
		2 정책 투명성·신뢰성제고 (0.10)	2.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(0.10)	
		3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 (0.30)	3-1.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(0.05)	
			3-2.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(0.20)	
			3-3.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(0.05)	
		4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 (0.40)	4-1.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(0.20)	
			4-2.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(0.20)	
	B.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	감점 지표	1.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	총점의 10%까지

[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]

[평가부문] A-1. 반부패 인프라 구축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1-1.
자체감사
활성화</td><td rowspan="2">자체감사
활동
(100)</td><td>
○ 각종 감사지적 사항(50)
- 각종 감사지적 건수(특정 부서 점검 제외)
- 기 간 : 2013. 10. 01. ~ 2014. 09. 30.
<table>
<tr><th>지적건수</th><th>배 점</th><th>반영률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3건 이하</td><td>50</td><td>13~15건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4~6건</td><td>40</td><td rowspan="3">16건 이상</td><td rowspan="3">0</td></tr>
<tr><td>7~9건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10~12건</td><td>20</td></tr>
</table>
※ 감사별 평균 건수 기준임
※ 미해당 부서 평균 점수 부여
※ 감사종류 : 해빙기(3월), 특별감사(5월),
행락철, 위생(6월), 산불(11월),
동절기(12월), 복무점검 등
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
○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(50)
- 부서별 감사 지적사항 제출일 준수여부
- 기 간 : 2013. 10. 01. ~ 2014. 09. 30.
<table>
<tr><th>제출 경과일수</th><th>배 점</th><th>제출 경과일수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미경과</td><td>50</td><td>10~12일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1~3일</td><td>45</td><td>13~15일</td><td>25</td></tr>
<tr><td>4~6일</td><td>40</td><td rowspan="2">16일 이상</td><td rowspan="2">20</td></tr>
<tr><td>7~9일</td><td>35</td></tr>
</table>
※ 미해당 부서 평균 점수 부여
※ 부서별 발송일 기준
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1. 반부패 인프라 구축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1-2.
부패처벌
강화</td><td rowspan="2">부패공직자
처벌 강화
(100)</td><td>○ 행동강령 위반(50)
-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 현황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배 점</th><th>구 분</th><th>배 점</th></tr><tr><td>없 음</td><td>50</td><td>경징계 건당</td><td>-15</td></tr><tr><td>주의 건당</td><td>-5</td><td>중징계 건당</td><td>-20</td></tr><tr><td>훈계 건당</td><td>-1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※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부서는 만점 부여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○ 성실의무 위반(50)
- 각종 회의 및 교육 미참석 등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배 점</th><th>구 분</th><th>배 점</th></tr><tr><td>없음</td><td>50</td><td>3명</td><td>-30</td></tr><tr><td>1명</td><td>-10</td><td>4명</td><td>-40</td></tr><tr><td>2명</td><td>-2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※ 위반사례가 없는 부서는 만점 부여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2. 정책 투명성·신뢰성 제고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2-1.
업무
추진비 등
사용내역
공개</td><td rowspan="2">업무추진비
사용내역
공개
(100)</td><td>
○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(50)
- 회의비, 간담회비, 행사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의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
- 공개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만 인정(파일 별첨)
- 공개장소 :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(업무추진비 공개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▪ 공개하였을 경우</td><td>50</td></tr>
<tr><td>▪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</td><td>0</td></tr>
</tabl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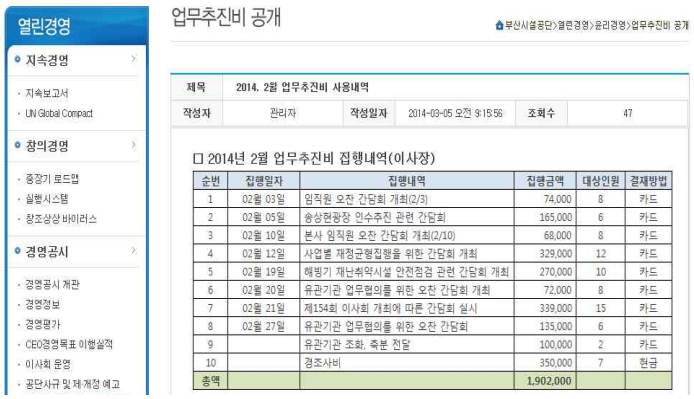

○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도(50)
-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한 월 중 공개한 월의 횟수
<table>
<tr><th>실적
(횟수)</th><th>4회</th><th>3회</th><th>2회</th><th>1회</th></tr>
<tr><td>점수</td><td>50</td><td>37.5</td><td>25</td><td>12.5</td></tr>
</table>
※ 평가기간 : 2014. 6. 1. ~ 9. 30.(4개월)
※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은 월은 공개 건수 인정
※ 실·단·관별 공개내역으로 소속 부서 점수 부여
(주무부서 취합 후 익월 10일까지 감사팀 제출)
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3.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3-1.
제도개선
권고과제
이행</td><td>권고과제
이행
(100)</td><td>
○ 권고과제 이행실적(100)
-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이행완료 실적 평가
※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(관련 규정 조항, 문서 등)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
<table>
<tr><th>실적
(횟수)</th><th>2회이상</th><th>1회</th><th>해당사항없음</th></tr>
<tr><td>점수</td><td>100</td><td>80</td><td>평균값</td></tr>
</table>
※ 평가대상 권고과제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구 분</th><th>조치기한</th></tr>
<tr><td>1</td><td>▪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· 실효성 제고방안</td><td>2013.12</td></tr>
<tr><td>2</td><td>▪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</td><td>2014. 4.</td></tr>
<tr><td>3</td><td>▪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</td><td>2014. 9.</td></tr>
</table>
※ 평가대상 권고과제 추가 시 별도 통보 예정
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3.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

단위과제	평가지표	평 가 방 법 및 산 식	비 고
3-2.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	**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(100)**	○ **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** -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부서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≪ 평가 기준 ≫ ▪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(예시) - 무자료 거래 · 분식회계 · 비자금 조성 · 탈세 등 근절 - 담합 · 부당 하도급 · 불공정 약관 · 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- 영업 침해 · 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- 비정상적 특혜 · 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- 사립학교 관리 · 감독 강화 ▪ 부서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부서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▪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▪ 제도개선, 부패영향평가, 행동강령 운영,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- **자율시책 제출 건수 : 1건**	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3-2.
반부패
자율시책
추진</td><td rowspan="2">반부패
자율시책
우수성
(100)</td><td>○반부패 청렴계획 과제의 실효성(50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의 목적 적절성(청렴관련)
(수15, 우12, 미9, 양6, 가3)</td><td>15</td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의 시급성, 중요성
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<tr><td>▪ 추진 계획 내용의 파급 효과 및 확산 가능성
(수15, 우12, 미9, 양6, 가3)</td><td>15</td></tr><tr><td>▪ 추진 계획 일정 및 대상 선정의 적절성 등
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</table>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○반부패 청렴계획 추진 실적(50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 이행 실적
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 이행에 따른 효과
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 이행의 난이도
(수15, 우12, 미9, 양6, 가3)</td><td>15</td></tr><tr><td>▪ 추진계획 이행에 따른 개선 사항
(수15, 우12, 미9, 양6, 가3)</td><td>15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3.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

단위과제	평가지표	평 가 방 법 및 산 식	비 고
3-3.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	**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(100)**	○ **부패행위 발생시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(100)** - 아래 표에 제시된 부패행위 발생 시 개선하기 위해 부서에서 추진한 노력 정도를 평가 ※ 미해당 부서 만점 부여 ≪ 부패행위 ≫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(예시 :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유용·횡령, 직권 남용, 문서 위·변조, 직무유기, 비밀 누설, 배임 등)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(예시 : 세입금 부당처리,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, 보조금 횡령·유용, 예산·재정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) 다.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고 부패행위 해당 가능	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3-3.
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</td><td>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(100)</td><td>○ 부패행위 발생 시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 기준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▪ 개선대책 제출부서 기본 점수
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▪ 부패취약분야 연관성
-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
(수20, 우16, 미12, 양8, 가4)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▪ 제도화 여부
- 규정 제·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
(수30, 우24, 미18, 양12, 가6)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▪ 효과성
-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
(수30, 우24, 미18, 양12, 가6)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▪ 창의성
-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(수10, 우8, 미6, 양4, 가2)</td><td>10</td></tr>
</table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4.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4-1.
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</td><td>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(100)</td><td>○ 구성원의 청렴마일리지 활동 실적(100)
- 평가대상 기간 동안 소속 구성원의 청렴활동 실적을 부서 활동실적으로 반영
<table>
<tr><th>매우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 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미흡</th></tr>
<tr><td>100</td><td>80</td><td>60</td><td>40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1~3등</td><td>4~8등</td><td>9~19등</td><td>20~24등</td><td>25~27등</td></tr>
</table>
※ 평가대상 27개 부서를 5개 그룹으로 배분
매우우수(10%) : 1 ~ 3등
우 수(20%) : 4 ~ 8등
보 통(40%) : 9 ~ 19등
미 흡(20%) : 20 ~ 24등
매우미흡(10%) : 25 ~ 27등
※ 부서마일리지는 근무직원의 마일리지 합계를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A-4.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

<table>
<tr><th>단위과제</th><th>평가지표</th><th>평 가 방 법 및 산 식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
<td>4-2.
반부패
수범사례
확산</td>
<td>반부패
수범사례
도입실적
(100)</td>
<td>
○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(100)
-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등 보급한 반부패 시책 중 개별 부서가 도입한 실적에 대해 백분율로 나타내 평가
※ 반부패 수범사례 시책은 별도 통보 예정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00%</th><th>75%~
100%
미만</th><th>50%~
75%
미만</th><th>25%~
50%
미만</th><th>25%
미만</th><th>실적
없음</th></tr>
<tr><td>배점</td><td>100</td><td>80</td><td>60</td><td>40</td><td>20</td><td>0</td></tr>
</table>
<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>
<table>
<tr><th>주요 부패취약분야</th></tr>
<tr><td>▪ 금품 등 수수 행위 제안·주선자에 대한 징계처분안
▪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금지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</td></tr>
<tr><td>▪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관련 규정화
▪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독립성 강화</td></tr>
<tr><td>▪ 복지부정수급 척결방안의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를 통한 협업 실시
▪ 정보공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도입
▪ 학부모 회비 징수 금지 규정의 규정화
▪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강화
▪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원 입소 교육 실시</td></tr>
<tr><td>▪ 전관예우 방지 방안 관련 행동강령 제정
▪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의 민간 확대를 규정화</td></tr>
</table>
※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(스마트 등록)에 의한 경우만 인정
</td>
<td></td>
</tr>
</table>

[평가부문] B-1.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

□ 감점 누계는 총점의 최대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단위과제	평가지표	평 가 방 법 및 산 식	비 고
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(감점)	부서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	○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※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○ 부패사건 모니터링을 통한 감점 ※ 외부기관의 각종 수사·감사·조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감점 ※ 대상 기간 : 2014년도 청렴도 측정시 부패공직자 통계자료, 부패사건 현황 자료 산정에 포함된 기간과 그 이후부터 청렴시책 평가 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 ○ 반부패 시책 추진 업무 충실도 ※ 자료 지연제출 및 미제출에 대한 감점 적용	